

#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제 정	1997.	3.
개 정	1999.	3.
개 정	2000.	3.
개 정	2001.	3.
개 정	2002.	3.
개 정	2002.	8.
개 정	2003.	3.
개 정	2005.	6.
개 정	2006.	3.
개 정	2007.	3.
개 정	2008.	3.
개 정	2009.	3.
개 정	2011.	3.
개 정	2012.	3.
개 정	2013.	7.
개 정	2015.	2.
개 정	2016.	2.
개 정	2016.	5.
개 정	2016.	11.
개 정	2017.	8.

## 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.)인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인 철도융합대학원, 글로벌외식조리대학원, 보건복지대학원, 경영대학원, Culture-Technology융합대학원(이하“특수대학원”이라 한다.)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6.02.18..)(개정2016.11.16.)

제2조(학위수여 요건)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 또는 사례연구보고서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심의에 통과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단, 비논문 학위 취득을 신청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자는 논문 및 사례연구와 구술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3.7.18)

②박사학위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,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 심사에 합격한 다음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.

## 제 2장 학위자격시험

제3조 (학위자격시험의 종류) 학위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.

제4조 (외국어시험)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.

- ②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문헌의 독해 및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.
  - ③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한다. 다만 학과별로 지정한 외국어의 소정능력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외국어로 논문 작성을 신청한 자 및 외국인유학생, TESOL-MALL대학원을 이수한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. (개정 2013.7.18)
  - ④2009년 신입생부터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선이수 과목인 대학원영어1,2 모두를 이수한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 (개정 2013.7.18)
  - ⑤ 외국어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 이전에 실시한다.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.
- 제5조 (종합시험) ①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②종합시험은 학위 논문을 청구할 만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.
  - ③대학원은 종합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논문작성을 신청한자는 종합시험을 면제한다.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별로 대학원 교육과정 중 2개 교과목 이상으로 하거나 실험실습보고서 및 작품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3.7.18) (개정 2017.8.28)
  - ④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. (개정 2013.7.18)
  - ⑤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.
- 제6조 (응시절차)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 (시험위원) 학위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다.
- 제8조 (재시험) ①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.
- ②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며, 불합격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에 대하여 재 응시할 수 있고, 재시험은 6회를 초과할 수 없다.
- 제8조의2 (자매대학 학위 취득자에 대한 인정) 대학원 재학중 자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4조 외국어시험과 제5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학위논문 및 사례연구와 구술시험

- 제9조 (논문 및 사례연구) ①석사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 또는 사례연구보고서(이하 ‘사례연구’라 한다)의 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야 한다.
- ②박사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(이하 “논문”이라 한다) 심사와 구술시험을 거쳐야 한다.
  - ③논문은 전공분야에서 선정된 주제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본 대학원의 논문작성 지침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시험과목에서 지정한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, 사례연구는 실험실습 결과, 작품 제작발표, 산업현장 사례조사, 그리고 특별과제수행 등의 보고서를 논문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한다.
- 제10조 (지도교수) ①논문 및 사례연구지도교수(이하 ‘지도교수’라 한다)는 1차 학기에 선정하고, 논문 지도 학생수는 최대 5명까지 지도할 수 있다. (개정 2011.3.1.)
- ②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단, 대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초빙교원을 추천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5.1.)
  - ③위촉된 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  - ④논문 및 사례연구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 (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시기) ①학위청구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2차 학기말(석사과정), 3차 학기말(박사과정)에 각각 소정의 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7.18.)(개정2015.02.16.)(개정2017.08.28.)

②논문 및 사례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 및 사례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특수대학원의 경우 논문 및 사례연구 등을 비 논문(교과목이수)으로 변경하여 학위 취득을 하려는 자는 3차 학기말 또는 4차 학기말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4차 학기말에 변경신청을 한 경우 5차 학기의 교과목 이수를 위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7.18.)(개정2015.02.16.)

③삭제(개정 2013.7.18.)(삭제2016.11.16.)

④삭제(개정 2013.7.18.)(삭제2016.11.16.)

⑤삭제(삭제2016.11.16.)

제12조 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①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고, 수료학점이 충족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은 각 학과에서 정하는 학술지 논문게재 조건을 선행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8.28.)

②논문 및 사례연구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1. 학위 청구논문 및 사례연구 심사요청서
2. 학위 청구논문 및 사례연구 요약서
3. 학위 청구논문 및 사례연구 심사위원 제청서
4. 학술지논문게재 (예정)확인서 및 게재 논문 1부(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시)(개정2017.08.28.)

③ 논문 및 사례연구는 매년 5월과 11월의 첫째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논문 및 사례연구 제출자격의 유효기간은 석사학위 과정 수료 후 5년(군복무 기간 제외)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 7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.

제13조 (심사위원) ①논문 및 사례연구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 및 사례연구 심사위원(이하 '심사위원'이라 한다)이 이를 행한다.

②석사학위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및 초빙외래교수 자격이상자로 구성하며, 박사학위는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개정(2011.3.1.)

③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이상, 박사과정은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,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. 개정(2011.3.1.)

제14조 (심사 및 구술시험) ①논문 및 사례연구심사(이하 '심사'라 한다)는 2회 이상 구술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한다.

②심사는 “가” 또는 “부”로 판정하여 석사학위 2/3 이상, 박사학위는 4/5 “합격”으로 판정을 얻어야 한다.

③심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정 보완을 지시하여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으면서 보완한 후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

④재심사에서도 불합격한 논문 및 사례연구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새로운 논문 및 사례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.

⑤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심사 후 5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완성논문 등 제출)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 및 사례연구는 심사위원 전원의 인준을 받아 소정 기한 내에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 (자매대학 학위취득자의 논문제출) 대학원 재학중 자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심사 및 구술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되, 논문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 4장 학위수여

제16조 (학위수여) ①대학원장은 심사까지 통과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에 대한 사정의결을 거쳐야 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학위수여 사정의결에서 통과된 자에게는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.

③학위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.

제17조 (학위수여 취소) ①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과정 이수 중에 학생의 신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거나 또는 학위를 받은 후 그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②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 (기타) 학위수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본규정 제5조(종합시험)①항, 제10조(논문지도교수)①항은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3.7.18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.

부 칙(2016.5.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제11조 1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, 제5조 3항, 제12조 1항 및 2항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도 적용한다.